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주된수술 이외의 수술시)

- 19. 질병군 진료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제1편(행위별 수가)제2부제9장제1절(기본처치 제외) 또는 제10장제3절 제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과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실시되는 수술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 Q. 질병군으로 입원진료 중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요실금수술은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질병군 수가에는 급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가 있으며, 환자가 요실금수술을 원하는 경우라도 수술이 요양급여대상 인지 비급여대상인지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비급여 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 수술비용과 비급여 수술에 사용 된 치료재료 등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실금 수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11.11.25)

만약 요양급여대상이면 해당수술 소정점수만을 보존받을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재료에 대해선 보존받을수 없습니다.

Q.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에서 '분만 전 처치(자-437)', '분만 후 처치(자437-1)', '제왕절개술 전 질식분만시도(자 451-1)' 등의 처치를 실시한 경우 질병군 소정점수 이외에 추가산정 여부

질병군 진료기간 중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다른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급여상대가 치점수 이외에 다른 수술료의 추가산정이 가능함.

'분만 전 처치(자-437)', '분만 후 처치(자437-1)', '제왕절개술 전 질식분만시도(자451-1)' 등은 분만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처치 등으로 서로 다른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수기료는 추가 산정할 수 없음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

질병군 진료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이외에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는?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이외에 제1편제2부제9장제1절(기본처치 제외) 및 제10장제3절, 제4절의수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 수술의 수기료를 추가 산정함. 또한, 질병군 주진단과 다른 상병으로 실시되는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하며 비위관삽관술 등 질병군 주된 수술 및 그 외 실시되는 수술의 과정에 발생되는 처치 등은 해당되지 않음. 또한 각종 처치(위세척, 질강처치, 직장맛사지, 피부과처치, 자궁내장치삽입술 등), 체외충격파쇄석술, 혈액투석, 응급처치 등은 산정이 불가함

질병군 진료시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질병군 주된 수술 이외에 실시한 수술은 특정내역 MT007(DRG세부내역)의 내역구분 'COP'에 기재하여 청구하고 질병군 수술 이외에 실시한 수술료에 종별가산한 금액을 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기재함

(작성요령)

기타 자궁적출술(N04200) 질병군 진료시 자궁적출술(R4145)과 난소부분절제술(R4430)을 시행한 경우

Q. 부인과적 개복수술 또는 기타 개복수술시 병변 없이 실시한 충수절제술 인정여부

개복 수술시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충수절제술(Incidental Appendectomy)은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 고시 제2014-126호('14.7.30.) 「부인과적 개복수술 또는 기타 개복수술시 병변없이 실시한 충수절제술인정여부」